
2025년 김포시 중소기업 정부사업 공모참여 지원사업 운영지침

2025. 02.

김포산업지원센터

사업부서장	기업육성팀	박노현	팀장	☎ 070-4269-4084
-------	-------	-----	----	-----------------

목 차

1. 목적	1
2. 용어의 정의	1
3. 추진체계	2
4. 추진절차	4
5. 신청·접수	5
6. 전문가(컨설턴트)	7
7. 평가 및 선정	8
8. 수행 및 결과 제출	10
9. 지원금 지급	11
10. 평가위원 및 전문가 수당지급 기준	11
11. 시행일	12

1

목적

- ‘2025년 김포시 중소기업 정부사업 공모참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용어의 정의

- “2025년 김포시 중소기업 정부사업 공모참여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김포시 관내 중소기업의 정부사업 참여 유도 및 선정률 제고를 위해 전문가 활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 “전담기관”이라 함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김포산업지원센터를 말함
- “기업지원단”이라 함은 김포시 중소·벤처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김포산업지원센터 분야별 「외부평가위원 인력 풀(Pool)」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말함
- “평가위원회”라 함은 대상과제에 대한 선정 및 평가를 위해 3인 이상의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함
- “참여기업”이라 함은 사업에 선정되어 정부 및 유관기관의 공모사업 과제를 신청 또는 신청 예정인 중소기업을 말함
- “과제책임자”라 함은 정부 및 유관기관의 공모사업에 신청하면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기업의 임·직원

가. 추진체계도



나. 전담기관

- 전담기관으로서 김포산업지원센터의 담당 업무
 - 사업 세부지침 수립 및 시행
 - 사업신청서 접수·검토 및 평가
 - 참여기업의 참여제한 및 중복여부 확인
 - 사업의 점검 및 서류 접수 및 검토
 - 기업지원단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 사업진행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다. 평가위원회

- 전담기관은 지원대상 평가를 위하여 기업지원단 Pool을 활용하여 위원

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산·학·연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위원은 제외
- 참여기업 선정 우선순위 조정 및 선정, 지원금 확정
- 참여기업의 과제변경요청과 관련하여 필요시 과제 내용 변경 및 조정심의

<기업지원단의 전문가 Pool 모집분야>

구 분	전문가 유형
경영, 인사, 마케팅 등 비즈니스 분야	·교수 ·유관기관 전문가 ·국가공인자격 소지자 ·기타(실무경력자, 기업대표 등)
정책 연구	
생산·공정·품질 및 연구개발	
4차산업	
창업 보육	
특허 및 기술사업화	

라. 참여기업

○ 참여기업의 담당 업무

- 공모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추진 주도
- 공모사업에 필요한 활동 수행
- 사업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 사업지원금 교부 신청
- 사업성과의 활용 및 관련 보고서 제출 등
- 사업만족도 조사(설문) 참여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

4

추진절차

○ 추진절차별 내용

추진단계	추진방법	비고
추진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사업개요, 사업세부내용(지원대상, 추진절차 등) 등 	센터
공고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별 공고 계획 수립 - 공고문, 신청서 양식 	센터
사업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공고 	센터/ 유관기관
서류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서 제출(온·오프라인) ※'24년도 공모사업(R&D과제) 신청 또는 신청 예정 기업 대상 	중소기업 →센터
서류 검토 및 정량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서류 검토 ● 기업별 정량평가(서류평가) 실시 	센터
정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회를 3~7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 ● 참여기업 예비후보 선정 	평가위원회
선정 및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업 최종 선정 및 안내 ※ 중복수혜 / 행정처분 여부 조회 	센터 →중소기업
사업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별 과제 수행(공모사업별 기간 상이) 	중소기업
결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사업 결과물 제출 ※결과보고서, 컨설팅 일지 등 	중소기업 →센터
사업지원금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원금 교부 신청 	중소기업 →센터
교부결정 및 사업지원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신청서 확인 및 교부결정 통지 ● 사업지원금 지급 	센터 →중소기업
사업결과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결과 보고 및 만족도 조사 	센터

가. 공고

- 전담기관은 김포산업지원센터, 김포시 등 홈페이지에 공고
- 전담기관은 전자신문, 현수막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공고 홍보
- 공고내용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
 -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 신청자격, 신청요건, 평가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나. 신청대상

□ 참여기업의 참여 자격

-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 정부 및 유관기관 등의 공모사업 유치를 희망하는 R&D역량을 보유한 기업
 - 2025년도 기준 공모사업(R&D과제)에 신청 또는 신청 예정인 기업

□ 지원제외 대상 중소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중소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인 중소기업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분야와 과제 내용이 상이할 경우
- 사업기간 중 타 시로 이전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또는 금융기관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할 경우(기업, 기업대표, 과제책임자)

- 공고일 기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중소기업
- 최근 2년 이내 동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

다. 지원분야 및 지원조건

□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정부 및 유관기관의 공모사업(R&D과제) 신청을 위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작성을 위한 전문가 활용비(컨설팅) 지원

□ 지원조건

- 지원금은 전문가 활용 비용의 100% 이내로, 기업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지원한도 초과액은 해당 기업이 부담
- 신청 공모사업의 사업비 규모별 전문가 활용비 차등 지원

사업비	지원금액(최대)	전문가 컨설팅 횟수
2억 이상	1,000만원	20회 이상
1억 이상 ~ 2억 미만	500만원	10회 이상
6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400만원	8회 이상
3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300만원	6회 이상
3천만원 미만	200만원	4회 이상

※사업비는 기업에서 공모사업에 신청한 과제의 총사업비(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

- 참여기업 지원 목표는 5개사 내외로 하며, 잔여사업비 발생시 예산범위 내 추가지원 가능

라. 신청방법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전담기관 홈페이지(www.gopa.or.kr)에서 공고문 확인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이메일 및 오프라인)

○ 사업신청서류

사업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서식1] ○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2]						
<p>증빙서류</p> <p>※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p>	<p>○ 사업자등록증명</p> <p>○ 공장등록증명(해당시)</p> <p>○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p> <p>○ 최근 1개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p> <p>○ 상시근로자 확인서류</p> <p style="text-align: center;"><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0f0e0;"> <th style="width: 30%;">구분</th> <th>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상시근로자 없음</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td> </tr> <tr> <td>상시근로자 있음 (택1)</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td> </tr> </tbody> </table> <p>○ 전문가 재직증명서/이력서 1부 ※전문가 없을 시 미제출</p> <p>○ 정부 및 공모사업(R&D과제) 공고문 ※공고예정 사업은 미제출</p>	구분	제출서류	상시근로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상시근로자 있음 (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구분	제출서류						
상시근로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상시근로자 있음 (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p>가점서류 (해당시 제출)</p>	<p>○ 국가 및 공공기관 과제(사업) 수행실적 - 수행실적서, 협약서, 계약서 등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 연구인력 재직증명서 - 연구인력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연구인력 학위증명서(석·박사)</p> <p>○ 연구부서 보유현황 증빙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업부설연구소 발급 자료</p> <p>○ 기타 우대기업 가산점 증빙 ([서식1]신청서 참고)</p>						

6 전문가(컨설턴트)

가. 전문가 매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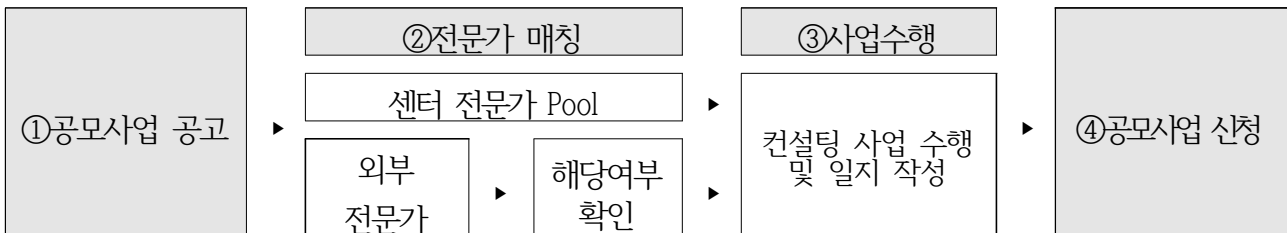
- 공모사업 참여 및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는 참여기업에서 직접 섭외
 - 대학 및 전문 연구기관, 전문 컨설턴트, 전문 컨설팅 기관 소속 교수 및 전문가를 활용(사업계획서 작성 등)하여 공모사업 참여

○ 해당 전문가는 컨설턴트는 ‘전문가 기준 3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등급	경력 기준	계(원)	추가인정 기준
특급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24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985,000	· 박사학위 소지자 : 경력 6년 인정 · 석사학위 소지자 : 경력 2년 인정 · 기술사 자격증 보유자 : 경력 6년 인정 · 경영.기술지도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록증 보유자 : 경력 3년 인정
1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834,000	
2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757,000	
3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644,000	
4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518,000	
5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388,000	

나. 전문가 활용

○ 매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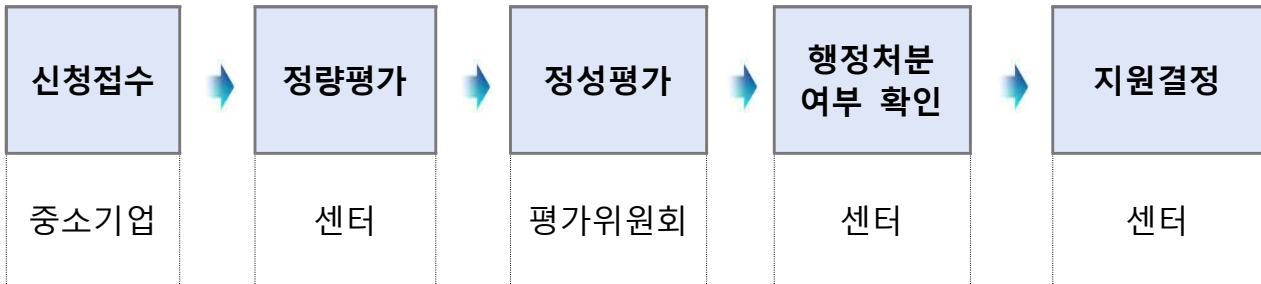
○ 공모사업 결과 발표 이후, 전문가 활용비 지급을 위한 결과보고서 및 컨설팅 수행일지 제출

- 결과보고서는 기업과 전문가가 같이 작성하며, 일지는 전문가가 작성(양식 별도 배포)
- 전문가는 신청 공모사업의 사업비 규모에 따른 컨설팅 횟수 이상 방문하여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작성 등을 위한 컨설팅 수행
- 전문가는 R&D과제 사업계획서 작성 후, 필요시 발표자료 작성도 지원
- 전문가는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등에 관한 작성자료 및 증빙자료 제출

가. 선정절차

○ 신청과제에 대한 서류검토를 통해 참여 자격 등 확인

-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불분명한 경우 등 필요시 현장실사 진행



나. 서류심사

○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에 대하여 서류평가표[별표2]와 아래 사항을 확인

- 공고에서 제시한 요건의 충족 여부
- 타 기관 등이 지원하는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참여기업 및 기업 대표의 신용불량 여부, 제재 대상 등

<과제 중복성 검토기준 및 방법>

- ① 중복성 판단요소 : 개발목표, 개발방법, 개발내용
- ② 중복성 판단기준 :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중복과제로 판단
- ③ 중복성의 검토방법 :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 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경기도 R&D 기술개발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
 - 중복성 검토결과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활용하여 중복성 여부를 판단

○ 전담기관은 신청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신청기업에 서류 보완을 요청

○ 서류검토 결과는 30%의 비중으로 반영(정량평가)

- 전담기관은 신청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조회 및 확인
 - 환경관련 단속, 위반건축물 관련 조회, 지방세 체납 여부

다. 심사 및 선정(선정평가위원회)

- 지원업종별 전문가로 분야별 선정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최소 3인 이상 구성
- 신청기업과 경쟁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전문가는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
- 평가위원회를 원활히 진행하고,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전담기관의 업무담당자 1인이 간사로 참석
-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위원회 운영수당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 하되, 전담기관에 소속된 직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 평가내용[별표3]
 - 사업의 지원 필요성
 - 사업의 적정성
 - 사업 기대효과
- 선정은 평가위원회 점수 및 서면평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을 고득점 순으로 참여기업을 선정
- 동일점수일 경우 정성평가 점수, 정량평가 점수 순으로 선정
- 포기기업 발생시 차순위를 선정
- 전담기관은 지원과제 선정 이후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참여기업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차우선 순위 참여기업에게 추가 선정되었음을 통보

8

수행 및 결과 제출

가. 과제수행

- 참여기업은 신청서류 및 협약서에 따라 2025년도 내에 정부 공모사업 (R&D과제)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포기신청서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전담기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위에 따라 포기 신청한 기업에 대해 포기 승인일을 기준으로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나. 결과제출

- 참여기업은 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결과 발표 이후, 결과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서식 제공)1부
 - 컨설팅 일지 1부
 - 컨설팅 수당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컨설팅 수당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9

지원금 지급

- 전담기관은 결과보고 기준으로 과제 완료 여부를 정하며, 완료된 기업에 한 해 사업지원금 교부 신청을 요청
- 참여기업은 사업지원금 교부 신청 시 사업비 지원금 교부신청서[서식4] 및 다음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
 - 컨설팅비용 등에 대한 내역서(견적서, 거래명세서 등) 각 1부

- 컨설팅비용 등에 대한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입금증 등) 각 1부
 - 통장사본 1부
- 전담기관은 사업비 지원금 교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참여기업의 사업지원금을 기업통장으로 지급

10 평가위원 및 전문가 수당지급 기준

- 전담기관은 평가, 선정 등 동 동사업과 관련한 평가위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함

<평가위원 수당지급 기준표>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원)
선정수당	1부당 2만원	(10개사 선정기준) - 2만원 x 10부 = 20만원 ※(참고)최대 30만원

11 시행일

- 이 운영지침은 사업공고일부터 시행

서식번호	제목
[서식 1]	사업 신청서
[서식 2]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3]	사업 협약서
[서식 4]	사업지원금 교부 신청서
[별표 1]	지원제외 대상
[별표 2]	서류평가표
[별표 3]	선정평가표

[서식1] 사업신청서

〈2025년 중소기업 정부사업 공모참여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내용

신청 기업 현황				
기업 현 황	기업명		대표자	
	설립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업종코드	
	주생산품		주요 보유설비	
	상시종업원수		전년도 매출액	
신청 자	과제책임자명		전화번호	
	부서 / 직책		이메일	
소재 지	본사			
	사업장(공장)			
가 점 사 항	과제 수행실적	총 0 건	연구인력 보유현황	총 0 명
	우대사항 (해당시 체크)	<input type="checkbox"/>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가족친화경영기업 <input type="checkbox"/> 일자리우수기업 <input type="checkbox"/> INNO-BIZ기업 <input type="checkbox"/> MAIN-BIZ기업	<input type="checkbox"/> 녹색기술인증기업 <input type="checkbox"/> NET 인증기업 <input type="checkbox"/> NEP 인증기업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input type="checkbox"/> 여성기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기업 <input type="checkbox"/> 김포시 청년기업 <input type="checkbox"/> 김포시 우수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기업부설연구소
신청 내용				
공 모 내 용	공모사업명			
	부처명		신청기간	2025.00.00 ~ 2025.00.00.
	세부과제명	※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명” 입력		
	총 사업비	총 0원 (정부지원금 : 0원, 기업부담금 : 0원)		
전문가 활용 내용(컨설팅)				
전 문 가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컨설팅 소요비용 ※부가세 제외		총 0 원	컨설팅 횟수	총 0 건

2. 세부내용

추진내용	
기업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혁, 주요사업, 강점(생산품, 기술, 시설) 등의 간략한 기업 소개 자유롭게 작성 ※ 1/2페이지 이내
과제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기재 ○ 신청 공모사업 대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공모사업의 주요 배점 항목 분석 - 사업의 주요 특성 분석(가점 또는 우대기업 요건 등) ○ 공모사업 준비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에서 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준비정도 - 주요 공략방법 등
필요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모사업 지원의 목적과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성 : 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가?(구체적으로 작성) - 목적 : 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기업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구체적으로 작성) 2. 공모사업 참여 준비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사업 참여시 기업의 장점 - 공모사업 참여시 기업의 단점(보완해야 할 점)

기대효과	※ 공모사업 참여 기대효과 (신규 기술 개발, 매출증대, 일자리 창출 효과 여부 등) 작성 -
------	--

컨설팅 내용	※ (컨설팅 중점 내용(공모사업 참여 애로사항, 해결방법, 절차 등)
-----------	--

진행일정

추진내용	세부 추진일정					
	월	월	월	월	월	월
. 예시) 공모사업 공고						
. 예시) 사업계획서 작성						
. 예시) 선정절차 진행						
. 예시) 결과보고						
완료 예정일	2025년 월 일					

위와 같이 「2025년 김포시 중소기업 정부사업 공모참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 00. 00.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재단법인 김포산업지원센터장 귀하

[서식2]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업 체 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E-Mail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안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신청 제한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사업의 지원대상 평가, 선정 후 연락·확인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이메일, 연락처(휴대전화) 회사명, 회사주소(본사/지사), 회사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직위/직책
보유·이용 기간	영구(단, 5년 이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파기)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추가 수집 항목	행정처분 여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지원사업의 실적(성과)보고 등에 활용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이메일, 연락처 : 휴대전화 팩스번호 회사명, 회사주소(본사/지사), 회사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직위/직책
제공 기간	영구
제공받는 기관	중앙·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기업 지원사업 수행 및 운영기관
제공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귀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2023년 김포시 중소기업 정부사업 공모참여 지원사업」 및 사후관리 기간에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에게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식3] 사업 협약서

김포시 중소기업 정부사업 공모참여 지원사업 협약서

(재)김포산업지원센터, 참여기업, 전문가는 『김포시 중소기업 정부사업 공모참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합니다.

사업명	김포시 중소기업 정부사업 공모참여 지원사업 협약서			
과제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협약기간	2025년 월 일 ~ 2025년 월 일			
협약금액	총 원 (컨설팅 횟수 : 최소 00건)			
협약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전담기관	김포산업지원센터	센터장	
	참여기업		대표	
	전문가			

제 1 조【목적】

이 협약은 (재)김포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이 시행하는 「김포시 중소기업 정부사업 공모참여 지원사업」(이하 “사업”) 수행에 관하여 센터, 참여기업,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 2 조【협약의 범위】

센터와 참여기업은 사업 추진과 관련해 다음 각항의 사항을 협약한다.

①(협약 목적)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간 사업 수행에 관한 상호 협력 및 이행을 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사업 수행)

1. 센터, 참여기업, 전문가는 협약서, 사업신청서, 공고문,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참여기업은 사업의 운영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업절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사업수행 및 지원금 지급)

1. 참여기업과 전문가는 협약서 및 사업의 내용과 일정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참여기업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컨설팅 비용 전액을 전문가에게 선지급하며, 추후 사업지원금 교부 신청시 증빙서류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여기업과 전문가는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정부공모사업 결과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전담기관은 결과보고 내용에 따라 과제완료여부를 평가하며, 과제 완료된 참여기업에 한하여 사업지원금 교부 신청을 요청한다.

-
5. 전담기관은 사업지원금 교부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6. 참여기업에 의해 본 협약서에서 정한 제반사항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미흡한 경우에 전담기관은 지원금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관련자료 제출)

1. 참여기업은 센터가 사업과 관련된 자료, 현장 확인 및 서류열람 등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 참여기업은 사업종료 이후 최대 1년까지 센터가 주관하는 추정성과분석에 필요한 정보, 자료제공 요청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⑤(협약 변경) 센터와 참여기업은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⑥(협약 해지) 센터는 다음 사항이 발생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부도, 폐업 등의 경우
2. 사업기간 중 참여기업의 타 시로 이전
3.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5. 협약서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6. 참여기업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⑦(기밀유지) 센터, 참여기업, 전문가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취득한 참여기업의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수 없다.

⑧(관계규정의 준수)

1. 참여기업과 전문가는 본 사업의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본 협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는 사항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센터는 운영지침에 의하여 제재하고 사업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

⑨(결과물 및 성과의 활용 등)

1. 참여기업은 사업종료 후 「지원사업 성과 및 만족도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참여기업은 사업의 수행성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김포시 중소기업 정부사업 공모참여 지원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⑩(기타) 그 외 사업의 수행 절차는 센터의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 3 조【기타사항】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센터, 참여기업, 전문가에 의하여 정한다.

제 4 조【협약의 효력】

협약서는 센터, 참여기업, 전문가 각 1부씩 보관하고,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간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2025년 00월 00일

전담기관: (재)김포산업지원센터 센터장 (인)

참여기업: 대 표 (인)

전문가:

사업지원금 교부 신청서

1. 신청인

참여기업		대표자	
연락처		과제책임자	
소재지	(본사)		(공장)

2. 신청 내용

과제명			
	총사업비	사업지원금	기업부담금
	천원	천원	천원
	사업지원금 지급요청 금액		천원

3. 참여기업 사업비 입금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첨부서류]

1. 최종 결과보고서 1부.
2. 통장사본 1부.
3. 컨설팅 비용 내역 서류 사본 각 1부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
4. 컨설팅 비용 지출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입금증) 등

「2025년 김포시 중소기업 정부사업 공모참여 지원사업」 결과 제출에 따라 사업지원금을 상기와 같이 요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참여기업 :

대 표 자 :

(인)

재단법인 김포산업지원센터장 귀하

[별표1] 지원제외 대상

2025년 김포시 중소기업 정부사업 공모참여 지원사업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중소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인 중소기업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분야와 과제 내용이 상이할 경우
- 사업기간 중 타 시로 이전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또는 금융기관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할 경우(기업, 기업대표, 과제책임자)
- 공고일 기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
- 최근 2년 이내 동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

[별표2] 서류심사표

2025년 김포시 중소기업 정부사업 공모참여 지원사업 서류평가표

평가일 : 2025 . . .

참여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본사:	검토자	(서명)
	사업장(공장):		

기업현황 심사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점	
참여기업의 매출규모(30점)	30	-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상		
	25	- 전년도 매출액 20억 이상 ~ 30억 미만		
	20	- 전년도 매출액 10억 이상 ~ 20억 미만		
	15	- 전년도 매출액 5억 이상 ~ 10억 미만		
	10	- 전년도 매출액 5억 미만		
상시 종업원수(20점)	20	- 15명 이상		
	16	- 10명 이상 ~ 15명 미만		
	12	- 5명 이상 ~ 10명 미만		
	8	- 3명 이상 ~ 5명 미만		
	4	- 3명 미만		
김포시 산업 기여도(20점)	20	- 관내 사업활동 기간 10년 이상		
	16	- 관내 사업활동 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12	- 관내 사업활동 기간 3년 이상 ~ 5년 미만		
	8	- 관내 사업활동 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4	- 관내 사업활동 기간 1년 미만		
최근 5년간 정부R&D사업 및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참여(10점)	10	- 2건 이상		
	5	- 1건		
	0	- 없음		
참여기업의 연구인력 보유(10점)	10	- 상시근로자 석·박사 인력 2명 이상		
	5	- 상시근로자 석·박사 인력 1명		
	0	- 없음		
기업부설연구소 보유(10점)	10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0	- 없음		
가점 (최대10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2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도에 의한 기업	
	가족친화경영기업	2	- 경기도 가족친화경영 인증제도에 의한 기업	
	일자리우수기업	2	- 경기도 일자리우수 인증제도에 의한 기업	
	INNO(main)-BIZ기업	2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2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기업	
	NET, NEP 인증기업	2	- 신기술 혹은 신기술제품으로 인정받은 기업	
	사회적기업	2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벤처기업	2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여성기업	2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2	-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기업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	2	-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 기업	
	김포시 중소기업 대상 선정 기업	2	- 김포시 중소기업 대상 선정 기업	
합 계(100점)				

[별표3] 선정평가표

2025년 김포시 중소기업 정부사업 공모참여 지원사업 선정평가표

평가일 : 2025 . . .

참여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본사:	검토자	(서명)
	사업장(공장):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평가배점					계
지원 필요성 (40)	○ 사업 동기 명확성 및 컨설팅 필요성은 적정한가?	15	12	9	6	3	
	○ 기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가 정부공모사업의 취지와 일치하는가?	15	12	9	6	3	
	○ 정부 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역량 및 의지가 있는가?	10	8	6	4	2	
적정성 (30)	○ 신청기업(컨설팅기관)의 추진체계 및 진행계획은 적정한가?	10	8	6	4	2	
	○ 과제범위 대비 컨설팅 비용은 적정한가?	10	8	6	4	2	
	○ 과제에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준비는 적절한가?	10	8	6	4	2	
기대 효과 (30)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컨설팅 추진 계획을 과부족 없이 설정하고 있는가?	10	8	6	4	2	
	○ 컨설팅 내용에 따른 구체적 성과계획이 있는가?	10	8	6	4	2	
	○ 본 사업(공모참여 컨설팅)을 통한 기대효과가 적절한가?(연구개발, 사업화, 수요처 확대 가능성 등)	10	8	6	4	2	
총합 (100)							

평가의견